

1. 개정이유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1호, 2019. 10. 29. 공포, 2020.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시대상 품목 추가(별표 4 안 제3호마목)

-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대상별 표시 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

*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심사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 방법 가. ~ 라. (생 략) 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 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 치, 오징어, <u>꽃게 및 참조기</u>의 원 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는 국내산 (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 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 한다.	[별표 4]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 방법(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u>꽃게, 참조기, 다랑어,</u> <u>아귀 및 주꾸미</u>의 ----- ----- ----- -----.